

# 간호대학원 내규

시행: 2024.09.0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대학원 내규(이하 “내규”라 한다)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및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정) 본 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제3조(학과, 전공 및 입학정원) ①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의 학과, 전공, 학위명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전공별 입학정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 제2장 입학

제4조(입학지원자격)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 본 대학원 입학일 이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노인전문간호사전공과 정신전문간호사전공의 경우 제1호의 자격을 갖추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에서 입학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5조(지원절차)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전형방법)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 방법은 면접고사로 선발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7조(입학지원 제출서류)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입학원서(소정양식)
- 졸업(예정)증명서(학부 편입학자는 전적 대학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

3. 성적증명서(학부 편입학자는 전적 대학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4. 학업계획서(소정양식)
5. 자기소개서(소정양식)
6. 재직(경력)증명서(노인전문간호사전공과 정신전문간호사전공은 필수 제출. 임상간호전문가전공은 해당자에 한함)
7. 기타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8조(정원외 입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에는 본 대학원의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 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기타 법령에 의거한 자

제9조(입학허가) ① 입학은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학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2(입학허가의 취소) ① 입학이 허가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1.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본 대학원 입학일 이전에 학사학위 및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3. 노인전문간호사전공과 정신전문간호사전공에 지원한 자가 제4조 제2호의 입학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하위서류를 제출한 자
5. 입학전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

제10조(입학전형위원회) ① 본 대학원 입학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대학원장이 되며, 부대학원장, 학과장, 전공주임교수 또는 본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입학전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3장 편입학

제11조(지원자격)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내·외 타 대학원의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편입학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서류)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제7조 각 호의 서류와 전적 대학원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전형방법) 본 대학원의 편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고사로 선발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14조(편입학자의 수업연한) 편입학한 자는 본 대학원에서 2년(4개 학기) 이상 수학하여야 한다.

제15조(학점인정 등) 편입학자가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공주임교수(또는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제4장 등록

제16조(등록) ① 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적된다.

②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수업연한 내에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이나 논문대체과목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수업연한 이후에 추가로 등록하여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제17조(입학금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입학금을 반환한다.

1. 입학금이 과오납 된 경우
2. 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일 전일까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18조(등록금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3」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제19조(휴학생에 대한 등록금 반환기준) ① 등록을 마치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19조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단 학기 개시일부터 21일까지 휴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금을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학기 개시일에서 21일이 지난 날부터 휴학하는 경우에는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 제5장 수업

제20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5학기)로 한다.

②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③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해당과정의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는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다만, 논문지도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1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22조(수업방법) ① 본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과정의 특성상 주간에 수업을 할 경우에는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강의개설기준) 수강희망자가 과목별로 3인 이상일 경우에 강의를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제24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전공주임교수의 지도하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과목의 정정은 개강 후 2주 이내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단,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제25조(이수학점) ① 노인전문간호사전공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36학점으로 한다.

② 정신전문간호사전공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35학점으로 한다.

③ 임상간호전문가전공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26학점으로 한다.

④ 각 학위과정의 매 학기 취득학점은 논문지도학점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취득할 수 있다.

1. 전문간호사과정(노인전문간호사전공, 정신전문간호사전공) : 12학점

2. 임상간호전문가전공 : 7학점

제26조(타 대학원 과목이수) ① 본 대학원 재학생이 타 대학원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원 학위지도교수, 전공주임교수(또는 학과장),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하며, 한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제27조(출석일수) ① 출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2에 미달된 자는 해당 과목 성적을 취득할 수 없다.

② 공무 출장으로 인한 결석은 소속 기관장의 증명서를 사전 혹은 사후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하되, 학기당 3회까지로 한다.

③ 질병으로 인한 결석자는 병의원장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학기당 3주 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8조(재수강) ① 기 취득한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 신청은 학수번호가 동일하거나 운영위원회가 대체과목 또는 동일과목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 기 취득한 성적등급이 F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재수강을 할 수 되며, 재수강을 통하여 B+ 등급까지 만 취득할 수 있다.

③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을 최종 성적으로 인정한다.

제29조(출결관리) ① 교강사는 학기초 강의시작 직전에 출석과 지각의 기준을 수강생들에게 주지시키고, 그 기준에 따라 강의 시간마다 수강생의 출석, 지각 및 결석 사항을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 자료를 학기말에 본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강사는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본 대학원 행정실장은 교강사의 출·결강 및 휴·보강 현황을 종합하여 본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본 대학원장은 개설되는 강좌의 교강사 출·결강 및 휴·보강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장 학적변동

제30조(휴학)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학위지도교수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휴학을 신청하고, 학과장과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자는 정해진 기간이 아니더라도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되, 통산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특별휴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휴학은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입영통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해외파견으로 인한 휴학은 해외파견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매 학기마다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인사팀 확인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신, 출산 또는 만 7세 이하(및 취학 전) 자녀의 육아를 위한 휴학은 최대 2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다음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임신: 임신확인서

나. 출산: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진단서

다.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④ 신입학생과 편입학생은 입학 당해 학기에 휴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입학일 이후 군입대를 하는 경우. 단,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함

2. 학생 본인이 학기 중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

3. 학생 본인의 질병 치료를 사유로 하는 경우(종합병원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 치료진단서 필요)

4. 기타 본 대학원장이 정상적인 학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복학) 휴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제32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자퇴할 수 있다.

제33조(제적) 본 대학원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4. 타교에 입학한 자
5. 학업의 성업에 가망이 없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제34조(수료 및 졸업) ① 본 대학원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수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1. 제21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한 자
  2. 제26조에서 정한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을 이수한 자
  3. 취득학점의 평균평점이 B-(2.7) 이상인 자
- ③ "졸업"이라 함은 전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제7장에서 정한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거나 논문대체과목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제7장 논문지도 및 학위수여

제35조(학위수여 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1. 5학기 이상 정규학기를 등록하고 제34조에서 정한 학위과정의 수료 요건을 충족한 자
2.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자 또는 논문대체과목 6학점을 별도로 이수한 자

제36조(학위자격시험) ① 학위수여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소정의 학점 취득과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 학위자격시험은 학기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본 대학원장은 그 세부일정을 공고한다.
- ③ 학위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에 응시원서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본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학위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학기 이상 등록하고 응시학기 이전까지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⑤ 전공별 학위자격시험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전공	필수과목	선택과목
----	------	------

노인전문간호사전공	노인질환관리1, 노인전문간호총론 또는 노인전문간호총론과 건강증진, 노인복지간호 또는 노인장기요양관리	-
정신전문간호사전공	상급정신간호학세미나, 지역사회정신전문간호1	전공선택 과목 중 택1
임상간호전문가전공	간호이론, 간호연구	전공선택 과목 중 택1

- ⑥ 학위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한다.  
 ⑦ 학위자격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37조(학위지도교수 배정)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기 이상 정규학기를 등록하고, 정해진 기간에 학위지도교수 배정신청서를 본 대학원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과장은 학생의 의사를 반영하여 학위지도교수를 배정한다.

- ② 학위지도교수는 본 대학원과 간호과학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선임한다.  
 ③ 학위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구 학위지도 교수의 동의 및 학과장과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위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 제38조(논문예비계획서)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논문예비계획서를 학위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위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 명단을 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한다.  
 ③ 논문예비계획서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④ 학위지도교수는 논문예비계획서 심사결과보고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⑤ 논문예비계획서는 정해진 기간에 공개발표를 한다.

- 제39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5학기 이상 정규학기를 등록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수료에 필요한 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
  2. 논문지도학점을 이수하고 수료학점의 평균성적이 B-(2.7) 이상인 자
  3.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논문예비계획서 공개발표에 합격한 자

- 제40조(논문제출승인)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논문 제출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소정의 논문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논문 제출 승인서
  2. 성적증명서

### 3.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3부

- ② 논문의 규격 및 양식 등은 본교 표준양식에 따른다.
- ③ 제1항의 논문의 제출에 관한 세부일정은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41조(학위청구논문의 심사)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이하 “논문심사”라 한다)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논문 내용 심사와 구술심사로 한다.

제42조(논문심사위원회) ① 논문심사위원회는 학위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심사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해당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본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그 중 1인을 논문심사 위원장으로 둔다. 단, 학위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43조(논문심사의 합격 결정) ① 논문심사의 결과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위원장은 이를 정해진 기일 내에 본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학위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보완한 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논문을 심사위원의 확인을 받아 정한 양식에 따라 중앙도서관에 제출한 후 중앙도서관 학위논문제출 확인서를 본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논문대체) ① 논문대체과목은 5기에 신청하며,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한 후 논문대체 과목 수강신청서를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대체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논문대체과목 각각의 성적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P/N으로 성적을 평가하는 과목은 P를 받아야 한다.  
③ 논문대체과목 중 80점 미만이거나 N을 받은 과목이 있을 경우, 이후 학기에 개설되는 논문대체과목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제46조(학위수여 결정 및 종별) ① 학위수여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본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본 대학원에서는 간호학석사학위를 수여한다.

### 제8장 장학금

제47조(장학금 지급기준) ① 장학금 종류와 지급기준은 [별표2]과 같다.  
②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모든 장학수혜자는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B학점(백분율 기준 80점)이상이고, F학점이 없어야 한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장학금은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수업연한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⑤ 기타 기부 등에 의한 장학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제48조(이중수혜의 금지)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의 승인한 경우에는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중지급할 수 있다.

## 제9장 외국인학생

제49조(입학전형) ① 외국인의 입학전형은 수학능력과 재정능력 심사로 한다.

② 수학능력은 입학지원 제출서류와 면접 등을 통하여 심사하고, 재정능력은 입학지원 제출서류로 심사한다.

제50조(지원자격)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51조(한국어 구사능력)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한국어능력시험 TOPIK 4급 이상 취득자
2. 외국대학 한국어학과 졸업자
3. 대한민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2년 이상 수학한 자
4. 위와 동등 이상의 한국어 능력 보유자

제52조(입학지원 제출서류)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3조(외국인 등록) ① 본 대학원에서 수학할 목적으로 입국한 자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② 국내 체류 중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관할구청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4조(문제학생에 대한 조치) 외국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대학원장은 이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보고한다.

1. 입학허가 후 또는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한 경우
2. 출결사항이나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본 대학원에서 수학을 계속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 제적, 행방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수학목적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불법취업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거나 국내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10장 직제

제55조(직제) ① 본 대학원에서는 대학원장, 부대학원장, 학과장, 전공주임교수 및 행정직원을 둔다.

② 본 대학원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필요한 경우 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56조(운영위원회) ① 본 대학원 학위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 부대학원장, 학과장, 전공주임교수를 포함하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본 대학원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필요한 경우 각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심의
2.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학생의 입학, 징계, 퇴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5. 장학제도의 운영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6.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7. 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8. 본 내규가 위임한 사항 및 내규시행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제11장 보칙

제58조(보칙) 본 내규 이외의 사항은 본교 제규정을 준용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 부칙

본 내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내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제26조(이수학점) 제1항과 제2항 개정사항은 2023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35조(학위수여 자격) 논문대체과목 이수학점 개정사항은 2023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23년 3월 1일부 시행 내규의 부칙 제2조(경과조치)의 제1항은 이 내규 시행일(2023년 9월 1일)부터 폐지한다.

② 제26조(이수학점)와 관련하여 202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노인전문간호사전공 신입학생의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35학점으로 한다.

#### 부칙

본 내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내규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간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전공, 학위명 및 입학정원

과정	학과	전공	학위명	입학정원
석사학위 과정	간호학과	노인전문간호사전공	간호학 석사	20명
		정신전문간호사전공		
		임상간호전문가전공		

[별표 2] 간호대학원 장학금 지급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대학원장 장학	① 대학원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② 기타 대학원장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전문간호사 장학	① 전문간호사과정 입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자 ② 입시 장학에 한하며, 전문간호사전공 입학 정원의 50% 해당	500,000원
경희간호사 장학	①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재직 중인 간호사 ② 입시 장학에 한하며, 모든 전공에 해당	1,000,000원
간호리더 장학	① 2기 이상의 재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② 간호대학원 장학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I형 – 1,000,000원 II형 – 500,000원
특별장학	① 외국인 또는 새터민 등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장학금 지급 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군제휴장학	① 학·군 제휴 조건으로 입학하는 현직군인	등록금의 40%
모범장학	① 원우회 임원으로서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 ② 간호대학원 장학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등록금의 일부
조교장학	① 업무보조 및 근로를 제공하는 자 (I형: 주당 14시간, II형: 주당 7시간)	조교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

※ 각 장학 별 지급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장학금 지급 시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은 제외된다.

※ 장학 혜택을 받은 학기에 미등필로 휴학할 경우 장학 및 장학금은 취소된다.

※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5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계약학과의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간호대학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의 장학금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별표 3] 등록금의 반환기준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등록금 반환 발생일은 재학생의 경우에는 신청일, 휴학생의 경우에는 휴학기간 중 최초 휴학신청일 기준으로 하며 상기 제2호에서 정한 [반환사유 발생일]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평일을 해당기간의 말일로 한다.
- 입학이 허가된 학생으로 학력사항 또는 입학관련 서류의 위·변조 등으로 입학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금(입학금 포함)은 반환하지 않는다.